

글로벌페이 전용통장 특약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이 특약은 고객과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의 「글로벌페이 전용통장」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예금과목)

이 예금은 (원화)보통예금 및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(가입대상)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거주자에 한합니다.

제4조 (제한사항)

- ① 글로벌페이 전용통장은「글로벌페이카드」의 결제 및 해외ATM 출금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② 「글로벌페이카드」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페이원화통장과 글로벌페이외화통장을 모두 개설하여야 합니다.
- ③ 글로벌페이 전용통장의 이용은 글로벌페이카드의 한도, 발급카드 수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용한도내용은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예치통화)

- ① 개설 가능한 외화통화의 종류는 은행이 별도로 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② 개설 가능한 외화통화는 영업점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전용통장의 입금)

- ① 고객이 글로벌페이원화통장에 원화를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당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글로벌페이외화통장으로 즉시 외화로 입금되며, 고객은 글로벌페이외화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「글로벌페이카드」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글로벌페이외화통장으로 외화를 직접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
- ③ 글로벌페이원화통장에의 회당 최저 입금액은 10,000원 입니다.

제7조 (전용통장의 출금)

영업점창구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글로벌페이 전용통장 잔액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며, 국내ATM에서는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.

제8조 (이자의 지급방법 및 적용이자율)

- ① 글로벌페이원화통장의 이자는 매년 6월, 12월의 셋째주 금요일(단,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에 셈하여 익일(이하 “원가일”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② 글로벌페이외화통장의 이자는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셋째주 금요일(단,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에 셈하여 익일(이하 "원가일"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③ 글로벌페이전용통장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보통예금이율로 셈합니다
- ④ 글로벌페이카드 거래 취소로 재 입금된 취소 금액에 대해서 거래일로부터 재 입금된 날까지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

2017. 8. 1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: 제2017-약관-0121호